

제 564 호

1976. 7. 1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054 호 :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..... 3

제 1056 호 :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중개정조례..... 3

◎ 고 시

제 152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항) 일부변경지적승인..... 8

제 154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 8

제 157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 9

제 159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10

제 160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11

제 161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11

제 162 호 : 도시계획시설 (종합의료시설) 결정및지적승인...12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63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일부변경승인.....	13
◎ 공 고		
제 150 호 :	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.....	23
제 152 호 :	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시험 (제 1종보통) 일정 추가 실시공고	14
제 153 호 :	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 대체지정공고	14
제 154 호 :	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람공고.....	15
◎ 예 규		
제 334 호 :	종합상황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	16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6. 7. 13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54 호

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
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3 항중 「설계서와 공사비」를 「공사비」로 하고 동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시장은 제 1 항에 의하여 승인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제 9 조에 의한 공사비의 정산명세서를 실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때에 정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6. 7. 13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56 호

서울특별시공업용급수조례개정조례
서울특별시 공업용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목적은 수도법 제 17 조 및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공급조건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급수의 범위) ①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.

다만, 서울특별시장(이하 「시장」이라 한다)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.

② 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 지역 내의 산업 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장치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케 할 수 있다.

제 3 조 (공사의 시행)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행한다. 다만,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양수기 이하의 장치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상수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소유자로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전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.

- 1. 자체검사 수수료 사용자재 1개에 대하여 10원

2. 준공검사 수수료 1건에 대하여

10 만원 이하 1,500원

50 만원 이하 2,000원

50 만원 초과 3,000원

제 4 조 (시설분담금)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1 호 표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양수기의 고장) ① 공업용수 수요 가동은 양수기의 고장 또는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에 의한 계량 오차는 익월 분 사용료에서 정산한다.

③ 1 항의 검정 수수료 및 수리 비용 및 양수기 대금은 수요 가동으로 부터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한다.

제 6 조 (급수사용료) ① 공업용수 사용료는 별표 제 2 의 공업용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한다.

②공업용수 기본요금은 그 사용량이 신청량의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 급수 신청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.

제 7 조 (급수관 손료)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 3 호의 급수관 (양수기 제외) 손료를 징수한다.

제 8 조 (가압료 징수) ①시장이 특수 가압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업용수 사용자 등으로 부터 운영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②전항의 운영실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9 조 (타 조례의 적용)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급수조례」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10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점사 기타의 처분과 신청, 신고 기타의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징수한 가입금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 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본다.

시 설 분 담 금				
구	시 설 분 담 금	신 청 수 량	시 설 분 담 금	
당 초 수 요 처		1 ㎥ 당	13,000 원	
신 규 수 요 처		1 ㎥ 당	17,000 원	
<p>당초수요처 :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당시 투자한 사업체 (공장이전은 포함되지 않음) 를 말한다.</p> <p>신규수요처 : 공업용 수도공사의 발족이후 신규수요처를 말한다.</p>				
공 업 용 수 사 용 요 율 표				
구 역 별	분	1 전 1 개 월 기 본 요 금		기 본 량 초 과 사 용 요 금
		기 본 량	요 금	
시 내		신 청 량	1 ㎥ 당 4 원	신청량초과 1 ㎥ 당 10 원
시 외		신 청 량	1 ㎥ 당 5 원	신청량초과 1 ㎥ 당 15 원

별표 제 3 호

- 급 수 관 순 료 -

구 경 별	요 금
13 mm	1 전 1 개월 150 원
20	300
25	400
40	600
50	1,200
75	2,400
100	2,800
150	4,000
200	5,600
300	8,200
400	11,200
500	15,300

0744

187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2호

도시계획시설(공항) 일부
변경 지적 승인

- 1. 건설부고시제 84 호 (76.6.11) 로 시설 일부변경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(공항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 일부 변경 승

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시도시계획과, 관할 출장소 시민봉사실, 경기도 부천시 및 교통부 김포 국제공항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6.30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항 일부 변경 지적·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김포국제공항	영등포구 공항동 일대	7,602,264	
변경		영등포구공항동, 외발산동, 방화동, 과해동, 오곡동, 오색동일대 경기도 부천시 교강동 일대	6,428,400	경기도도시계획구역은 별도고시함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4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10 호 (74.8.9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

된 당시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 호 (74.1.5)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7. 2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2 의 1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 의 1
- 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, 이화여자대학
- 3. 면적및규모 : 8,103 ㎡ (2,451명) 육교 1 식
- 4. 시행자주소및성명 : 서대문구 대현동 11-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서 은 숙
-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

나. 준공예정일 : 77.5.1

- 6. 위치 및 계획영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- 7. 공사 설계 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서대문구청에 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57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49 호 (76.6.29) 로 추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은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 호 (74.1.5)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7. 8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
 용현동산 8 의 15 의 32명
- 2. 사업의종류 : 학교시설사업
 명 칭 : 서울대학교종합시설사업
- 3. 사업시행자주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
 신림동산 56 의 1
 성 명 : 서울대학교 총장 윤천주
- 4. 사업의착수 : 준공 예정 년 월 일
가. 착수년월일 : 76.7
나. 준공예정년월일 : 79.12.31
- 5. 위치도및평면계획도 : 별첨 (도면생략)
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악구청에
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56 호 (76.3.22)
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
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

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
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게
합니다.

1976. 7. 9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 위치 : 마포구 당인리
 철교-한강
- 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봉원천계수공사
- 3. 사 업 규 모 : D = 20 m
 L = 200 m
- 4. 사 업 시 행 자 : 서울특별시장
- 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76.7.10 -
 77.11.30
- 6. 사용 또는 주용할 재산의 소
 재지 : 별 첨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 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

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
조서

장동 - 신담로) 도로공사

3. 사업 규모 : B = 50 m

L = 660 m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0 호

4. 사업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76.7.10-

77.6.30

1. 건설부고시제 198 호 (71.4.7) 로
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
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
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
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
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
지 : 별 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
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서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
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1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976. 7. 9

서울특별시 장

1. 건설부고시제 223 호 (75.12.31) 로
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
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
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
부 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
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1. 사업시행의위치 : 서울특별시 성동
구 용답동 일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방사 4 호선 (마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7. 9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의위치 : 성동구 광장동 구의동 일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어린이대공원 - 천호대교간 (일체 교차로) 도로신설
3. 사업 규모 : 가. B = 8 m
나. L = 800 m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76.4.30 - 77.12.30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
수용법제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곽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

도시계획시설 (종합의료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종합의료시설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이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7.13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종합의료시설) 결정 및 지적승인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종합의료시설	강남구 내곡동 산 12-425의 9 필	31,714㎡ (9,593평)	

※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정비국 별첨 도면표지와 같음 (도면생략)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.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63 호
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 일부변경승인
 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(73.4.4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.
 가. 지적 일부 변경조서

이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 1976.7.13
 서울특별시 장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 원	연 장	기 점	공 점	비 고
기정	대로	3	112	25 m	350 m	시청앞광장	한국은행앞	소공동 86-1 및 6
변경	"	"	"	"	"	"	"	의 기차 확장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끝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0 호
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
 1. 천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626 구획내 천호동 116의 2호외 6 필지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 호(76.2.4)로 환지 계획변경 공람 공고한 바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

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.
 2. 환지 예정지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공람에 공합니다.

<p>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면 송달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</p> <p>1976.7.7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<p>㉞ 서울특별시공고 제 152 호</p> <p>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시험 (제1종보통) 일정추가실시공고</p>
---	---

1. 실시구분

운 전 면 허		응시원서접수기간	필기 시험일 정	시 험 장 소
종 별	구 분			
1 종	보 통	76.7.22-7.31	76.8.2	서울특별운 자동차운전 면허시험장

2. 참 고

기타시험세부 실시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 297 호 1976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공고에 의하여 종전대로 실시함.

3. 응시문의 안내

경찰국 교통과 (44.6592 , 44-7719
24-3337 , 24-3338)

1976.7.10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
㉞ 서울특별시공고 제 153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대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 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 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 및 대체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 다.

1976.7

서울특별시장

1. 지정업체						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6년수출 목표액	비고
469	삼양전자기기(주)	배송길	성동 성수동 2가 272-29	저항기	\$ 500,000	

2. 대체지정업체			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지정번호	501	좌동	
업체명	성광조명공업(주)	,	
대표자	김선경	이종구, 이순	
소재지	성북 정능동 646-3	좌동	
수출품명	현광램프	,	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154 호

장안평토지구획정리
사업시행인가공람공고

1976.7.13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인가를 건설부 공고 제 77 호 (76.6.25) 로 건설부 장관의 시행인가를 득하였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오며, 관계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에

공합니다.

1.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구역
서울특별시 동대문구, 면목동, 강안동, 성동구, 군자동 일부
1,858,300㎡ (562,133명)
2. 사업시행기간 : 1976.6.25 - 1980.12.31
3. 유의사항

예 규

가. 서울도시계획 장안명 토지구획
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업실시
기간중(공사)에 사업집행상 도
시계획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
여 당시가 사용케 되오니, 환지
예정지 지정 및 정지공사가 완
료되기 전까지는 공작물 설치
등의 행위를 금지 할것이며, 상
기 행위를 하고져 할 때는 구
획정리사업법 제 39 조의 규정에
의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
을것.

나.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권
리 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신,
구 토지 소유자 연서로 신고
할것.

4.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
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별송할 것
이나 미수령되는 토지 소유자 및
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
로 가름합니다.

◎ 서울특별시예규제 334호

종합상황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

종합상황실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7 조제 1 호중 다. . . 바. . . 사. . . 마
라. . .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근무는 A. B. C 조 3 조로
편성하여 교대 근무토록 한다.

바. 상황실장은 근무 교대시 작전
과장에게 교대 신고를 하여야 한
다.

사. 근무자는 무단이 좌석을 이탈
하지 못한다.

아. 상황실 근무요원의 복무 및
교체는 경찰경비부서 인사관리
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타. 상황실장은 중요사건 발생시
상황을 접수 기록하고 필요한
초동 조치를 취한후 보고 통보
하며 상황보고를 받은 주무과장
또는 당직과장은 필요하다고 인
정할 때에는 각 분직 및 주무
과 관계직원을 상황실에 정위치
케 하여 상황치리에 입하게 한

여야 한다.

제 8 조 중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무선통신에 의하여 처리되는 치안 상황 (교통정보센터, 지령실 및 112 신고센터) 도 일차적으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수리된 내용을 검토, 지령수단을 구분 (유선은 상황실, 무선은 지령실) 하여 지령케하고 계속상황을 파악 처리한 후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.

10. 지령실 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종합상황실 업무를 체계적 및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가. 살인, 강도, 살인강도사건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은 상황실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되 기동순찰차의 급배는 해당지역 순찰근무중인 특별순찰대 차량에 의한 다.

나. 폭행사건 등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우선 지령을 원칙으로 하되

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지령으로 할 수 있다.

다. 1. 2 장 . 1. 2 폭등 중요사건에 대한 무선통신 음어는 1 개 월마다 교환하여야 한다.

다만, 음어누설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교환토록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제 1 호 중 "경비과장이 부책한다" 를 "작전과장이 진다" 로 한다.

제 12 조 제 2 호 "가" 및 "마" 목 중 "경비과장" 을 "작전과장" 으로 한다.

제 14 조 제 1 호 중 "경비과장" 을 "작전과장" 으로 하고 동조 제 2 호 및 제 3 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하고 상황실근무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.

3. 상황실근무자 및 필요에 의하여 상황실에 출입이 허용된자는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제 2 호 "다" 목 중 "경비과장" 을 "작전과장" 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지 제 9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6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.

경찰국상황실근무편성표

